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2017년 7월 낙동강 체육공원내 구미캠핑장 개장에 따라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레저체험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미캠핑장의 목적, 위치 및 정의(안 제1조 ~ 제3조)

나. 개장일, 사용시간(안 제4조 ~ 제5조)

다. 사용료, 사용료 감면 및 반환(안 제6조 ~ 제8조)

라. 시설의 예약(안 제9조)

마. 사용자의 준수사항, 손해배상(안 제10조 ~ 제11조)

바. 시설의 사용제한(안 제12조)

사. 위탁 관리 및 운영(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구미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614-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설치된 카라반,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평상, 사무실, 매점,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주차장, 야외무대 및 그 밖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캠핑장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4조(개장일) 캠핑장은 연중무휴로 개장·운영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 캠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시간) 캠핑장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용료)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폰 뱅킹,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사용료 등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2.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시설의 예약)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사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캠핑장 시설을 예약한 자는 예약일로부터 48시간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별표 4에 따른 캠핑장 시설 사용권은 사용 당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최대 예약가능한 캠핑장 시설의 수는 종류별로 크기의 구분 없이 1일 3개까지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미시에서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5에 따른 캠핑장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캠핑장의 시설 및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한 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캠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사용하여

사용제한 기간과 그 제한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적으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사용자의 캠핑장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캠핑장 시설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3조(세입조치) 캠핑장 수입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4조(수입금 입금) 사용료로 징수한 전일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구미시 수입금 출납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 관리·운영) ① 시장은 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기관 및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캠핑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구미캠핑장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 캠핑장 사용료

구 분		사용시간	요 금 (원)			비 고
명칭	크 기		비수기(성수기제외)		성수기 (7월~8월)	
			주중	주말		
카 라 반	8m×12m (6인용)	1동/1일	80,000	100,000	160,000	전기사용료 포함
오토캠핑	9m×9m	1면/1일	20,000	20,000	30,000	
일반캠핑	4m×5m	1면/1일	15,000	15,000	20,000	
평 상	3m×3m (최대8인)	1개소/1일	10,000	10,000	15,000	전기사용 불가

□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시간	사 용 료	비 고
샤워장 (8인실/6동)	07:00 ~ 11:00	1,000원	1인/1회기준 (7세이하 1회무료)
	14:00 ~ 22:00		
바비큐그릴	1개/1일	10,000원	20개 보유

□ 주차장 사용료

구 분	사용시간	사 용 료	비 고
캠핑장 사용자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무료	1대/1회 (그외 차량은 외부주차)

※ 주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말 : 금,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을 말함)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캠핑장 사용시간(1일)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 퇴실시간 초과시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불가)

- 카라반 : 시간당 10,000원 사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 오토캠핑·일반캠핑 : 시간당 2,000원 사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 평상 : 시간당 1,000원 사용료 추가,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산정

■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구미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율(제7조 관련)

대상기간 감면대상	성수기	비수기	비고
1. 구미시민	20%	20%	카라반, 일반캠핑장, 오토캠핑장,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
2.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	50%	
3. 장애인(1~3급)	-	50%	
4. 국가보훈대상자	-	50%	
5. 기 타	-	50%	
※ 비 고			
-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의 장애 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따른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타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구미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주 체	시 기	유 형		
사용자 귀 책	성수기 주 중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사용료의 50% 공제후 환급 ·사용료의 80% 공제후 환급	
	성수기 주 말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료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료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료의 90% 공제후 환급	
	비수기 주 중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비수기 주 말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관리자 귀 책	성수기 주 중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5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80% 배상	
	성수기 주 말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4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6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90% 배상	
	비수기 주 중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 환급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비수기 주 말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 환급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제8조제1호의 천재지변으로 캠핑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4]

구미캠핑장 시설 사용권(제9조제2항 관련)

(앞쪽)

편 철 부 분	NO. 구미캠핑장 시설사용권(원부)	NO. 구미캠핑장 시설사용권(원부)	6cm
	1. 사용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1. 사용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용대상 :	2. 사용대상 :	
	3. 사 용 료 : 원	3. 사 용 료 : 원	
	20 . . .	20 . . .	
	구 미 시 장 ㉠	구 미 시 장 ㉠	
2cm	7cm	7cm	

(뒤쪽)

편 철 부 분	사용자 인적사항 기재	● 사용권 분실시 재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 캠핑장 내 개인용 그릴이나 가스불판 외에 불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 합니다 ● 캠핑장 사용 시 안전사항을 준수하며,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 발생된 쓰레기는 지정장소에 배출합니다. ● 캠핑장 내 공공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합니다. ● 불편사항 연락처 : 054- -	6cm
	성 명 :		
	연락처 :		
	인 원 :		
	비 고		
2cm	7cm	7cm	

[160mm×50mm(인쇄용지, 70g/㎡)]

■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5]

구미캠핑장 사용수칙(제10조 관련)

캠핑장 내에서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 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사용하셔야 하며, 사용은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 외 사용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지합니다.

2.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르며, 요금은 온라인을 통한 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전액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3. 장 소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개수대에서만 음식물 및 식기 등을 세척할 수 있습니다.

4. 자 동 차

- 차량의 출입은 가능한 22:00부터 07:00까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 시 서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잔디밭위 차량 진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 캠핑장 구역 내에서 폭죽놀이, 고성방가는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21:00부터 07:00시까지 다른 사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위 생

- 개인세면도구는 지급되지 않으니 양지하시고 공용비품을 청결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수대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아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와 폐수는 지정된 곳과 비치된 수거함에 분리배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봉투는 규정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7. 수목보호

- 사용자는 수목주변에서 가스나 석유연료 등 화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수목을 훼손 할 경우 행위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8. 애완동물

- 모든 애완동물은 항상 사람(주인)의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 동물의 배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캠핑장내에서는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9. 화재와 사고

- 캠핑장 내에서는 화재요인이 있는 물품사용 시 항상 주의해야 하며, 흡연은 불가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화기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10. 홍 보

-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1.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비품 망실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됩니다.

12.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전기시설

- 과도한 전기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기히터, 그릴, 난로, 밥솥 등의 전열 기구는 사용불가)
-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인하여 캠핑장 전체의 전기가 공급 차단될 염려가 있어 부득이 사용제한(1kW/일) 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14. 휴대물품의 제한

- 관리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휴대물품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이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귀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생략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인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생략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17년 상반기 구미캠핑장 개장 예정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구미캠핑장 운영비 및 사용료에 근거하여 세입·세출 등을 기초로 함

□ 구미캠핑장 사용료

구 분		사용 시간	요 금 (원)			비 고
명칭	크 기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달)		성수기 (7월~8월)	
			주중	주말		
카 라 반	8m×12m (6인용)	1동/1일	80,000	100,000	160,000	전기사용료 포 함
오토캠핑	9m×9m	1면/1일	20,000	20,000	30,000	
일반캠핑	4m×5m	1면/1일	15,000	15,000	20,000	
평 상	3m×3m (최대8인)	1개소/1일	10,000	12,000	15,000	전기사용 불가
샤워장	8인실/6동	07:00~11:00 14:00~22:00	1,000	1,000	1,000	1인/1회기준 (7세이하 1회무료)
바비큐그릴	1.2×0.7×0.3	1개/1일	10,000			20개 보유

- 운영비는 구미시예산 단가를 적용하며, 최근 5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1.9%)을 매년 적용한다.
- 추계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 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사용료 및 임대료	335,313	683,368	696,353	709,583	723,065	3,147,682
	소계(a)	335,313	683,368	696,353	709,583	723,065	3,147,682
세출	○ 구미캠핑장 운영비	325,274	662,908	675,505	688,341	701,420	3,053,448
	소계(b)	325,274	662,908	675,505	688,341	701,420	3,053,448
□ 총 비용(a-b)		10,039	20,460	20,848	21,242	21,645	94,23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 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해	당	없	음	
민 간							
기 타							
합 계							

5. 부대의견 : 세입(캠핑장 사용료) 및 세출(캠핑장 운영비) 예산은 추정비로서,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건설과 김대균
연락처	054-480-538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

• 구미캠핑장 사용료 및 임대료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사 용 료	성 수 기	99,781	203,354	207,218	211,155	215,167	936,675
	비수기주말 및 공 휴 일	90,530	184,500	188,006	191,578	195,218	849,832
	비수기평일	141,552	288,483	293,964	299,549	305,240	1,328,788
	소 계	331,863	676,337	689,188	702,282	715,625	3,115,295
임 대 료	매점임대료	3,450	7,031	7,165	7,301	7,440	32,387
	소 계	3,450	7,031	7,165	7,301	7,440	32,387
계		335,313	683,368	696,353	709,583	723,065	3,147,682

※ 단, 1차년도 금액은 '17년 하반기(6개월) 반영

2. 세출

• 구미캠핑장 연간운영비 산정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인 건 비	직접인건비	174,937	356,522	363,296	370,199	377,233	1,642,187
	소 계	174,937	356,522	363,296	370,199	377,233	1,642,187
경 비	보 험 료	16,501	33,629	34,268	34,919	35,582	154,899
	복리후생비	5,618	11,449	11,667	11,889	12,115	52,738
	전 력 비	34,137	69,571	70,893	72,240	73,613	320,454
	가스수도비	20,024	40,809	41,584	42,374	43,179	187,970
	수리수선비	29,716	60,561	61,712	62,885	64,080	278,954
	소 모 품 비	4,074	8,303	8,461	8,622	8,786	38,246
	사무관리비	19,823	40,399	41,167	41,949	42,746	186,084
	지급수수료	20,444	41,665	42,457	43,264	44,086	191,916
	소 계	150,337	306,386	312,209	318,142	324,187	1,411,261
계		325,274	662,908	675,505	688,341	701,420	3,053,448

※ 단, 1차년도 금액은 '17년 하반기(6개월) 반영

소관 실·과		건 설 과
입 안 자	과 장	최 규 호
	담 당	이 재 봉
	담 당 자	김 대 균 (480-5383)